

THE WEALTH GUIDE

2025 Vol.9



Part.1 자산 이전

누구에게 물려주지?

싱글&딩크를 위한 상속·증여 플랜

누구에게 물려주지? 싱글&딩크를 위한 상속증여 플랜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정하나 수석연구원

arihana@hanwha.com

(작성일 : 2025.8.29)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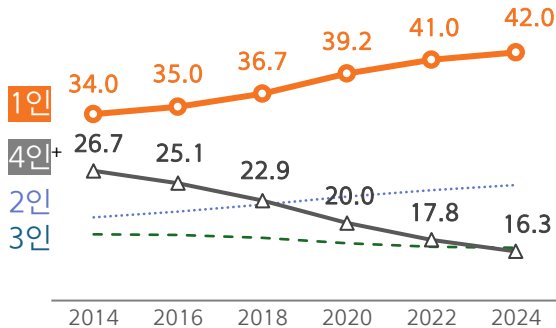
- 1인 가구가 천만 세대를 넘어서고, 딩크족(무자녀 맞벌이가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상속·증여 고민도 늘고 있음.
- 무자녀의 경우 원하는 대상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유언장 · 사전 증여 · 신탁 등 활용 가능
- 특히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설계를 통한 상속재산의 증장기 관리에 효과적

가족의 축소 1인 가구 & 딩크족 증가

- 한국의 1인 가구는 2024년 1,000만 세대를 돌파하며 전체의 42%를 차지하였으며, 과거 일반적이었던 4인 가구는 16%로 감소
- 결혼한 청년층 가구(가구주 25~39세) 중 무자녀 가구는 27%로, 특히 맞벌이의 경우 36.3%에 달함. 출산 연령층(19~49세)의 52.6%가 무자녀에 개입치 않는다는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또한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의 사회적 확대 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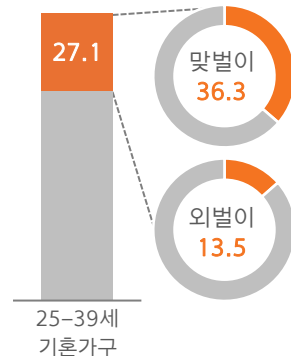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청년부부 무자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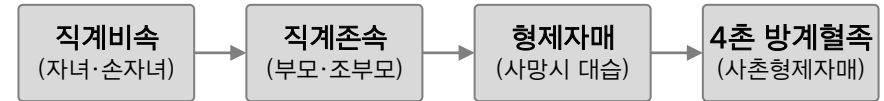


* 자료: (좌) 행정안전부, 2025 (우) 한국노동연구원, 2024

“자녀 대신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와 딩크족의 경우, 향후 상속·증여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음.** ‘살아 있을 때 모두 쓰고 가겠다’ 라는 의견도 많지만, 예측할 수 없는 노후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자산 축적 및 잔여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

- 민법상 상속순위



*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인

- 무자녀·독신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상속 의지가 강하나, 노후 손윗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직계존·비속 부재로 재산이 형제자매 및 그 대습자(조카)에게 균등 귀속됨. 따라서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등 본인의 뜻과 다르게 재산 분배될 가능성 존재**
- 특히 부동산·금융투자·법인지분 등 자산 규모가 큰 자산가일수록 재산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음.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조카·지인 등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 활용 가능**

1) 유언장을 통한 상속 집행 명확한 법적 절차 갖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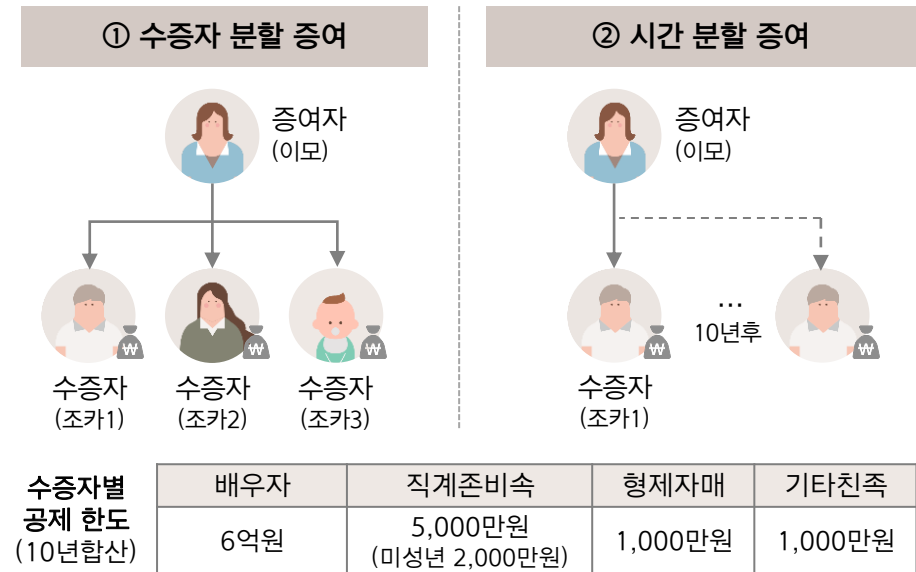
- **유언장**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분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로, 가급적 공증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유언’ 방식 추천. 다만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상 일부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됨
- **공정증서유언**은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사후 법원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한 집행 가능. 유언자가 공증인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 구술 ▶ 공증인이 필기 ▶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 정확성 승인 ▶ 서명 및 날인 順 진행
-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간편하지만, 형식요건 미비 시 무효 위험이 높아 단독 작성 및 보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가 자문 권장

구분	공정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
작성방식	공증인+2명 증인 앞에서 구술 후 공증인이 기록	본인이 전부 자필 작성 후 서명 및 날인
법적 안정성	형식 흠결 매우 낮아 효력 확실	사소한 흠결(날짜/주소 누락, 타인 작성 등)로도 효력 상실
집행 절차	검인 절차 불필요(집행 가능)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 필요
분쟁 예방	상속 분쟁 예방에 유리	효력 다툼 등 분쟁 위험 有

2) 사전 증여 활용

좋은 관계 유지하며 증여세 공제까지

- **사전 증여**는 생전에 원하는 대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금액별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됨. 따라서 ①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증여 ② 10년 단위 분할 증여 시 과세표준·적용세율 낮춰 총 세액 경감 가능



3) 신탁으로 오랫동안 확실하게 지원 보험금청구권 신탁 & 유언대용 신탁



- 싱글·무자녀의 경우 **사후 본인의 상속재산이 의사와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속시 주위 간섭이나 관리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유언을 통해 미성년 조카에게 재산 일부를 상속했다라도, 조카의 부모(피상속인 형제자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 이때 **신탁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의 관리·운용 권한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약정된 목적에 따라 자산 운용 및 분배하는 제도
- 사후 재산이 의도에 맞게 사용되길 원할 경우, 목돈 대신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이 지급되길 원할 경우, 특정 대상에게 반드시 상속하려는 경우 등 **구체적인 활용이 필요할 경우 특히 효과적**

일시 상속 vs. 신탁 활용 비교

	자산 이전	장점
일시 상속	<p>법정상속 순위 따라 일시 이전</p>	절차 단순, 추가 비용 미미 사전 준비 없이 집행 가능
신탁 활용	<p>계약조건 따라 시기·방식 상이</p>	분쟁 예방, 목적 지정 가능, 수익자 안정적 생활 지원

- 상속·증여를 위한 신탁 중 **보험금청구권신탁**은 2024년 관련법 개정으로 최근 도입. 이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권리를 신탁사에 맡기고, 신탁사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함.
- 일반 보험이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 신탁을 활용하면 **보험금 낭비를 막고 위탁자가 정한 일정 주기로 생활비, 간병비 등을 분할 지급하도록 설계 가능**. 현재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재산을 남길 수 있음. 단 현행 법령상 이 신탁의 수익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므로, 조카·형제자매·지인 등은 지정 불가
- 보험금 외에도 재산을 맡기는 경우 **유언대용신탁** 활용 가능. 이는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위탁자 사후에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도록 계약하는 제도. 유언장과 달리 민법상 엄격한 요식 행위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금융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위·변조 위험 낮음.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의 부모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또는 미성년 조카를 위해 특히 유용

신탁
자산
범위

보험금청구권신탁

보험금청구권
(사망보험금)

유언대용신탁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재산권 등

기부 및 반려동물 돌봄까지 사후에도 내 자산을 가치 있게



- 사후 기부를 고려하거나, 키우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목적으로 재산이 사용되길 바라는 사례도 있음. 단 기부나 반려동물 모두 직접 상속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집행할 주체(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해야 함.
- 기부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장이나 사망시점 유언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단체(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다”는 뜻을 명시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조건화 가능
- 반려동물은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돌봄을 맡길 사람에게 재산을 지정하면서, 조건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유언장만 있을 경우 상속 개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신탁은 효력에 따라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부 대상 지정 및 중장기 돌봄 등 위탁자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반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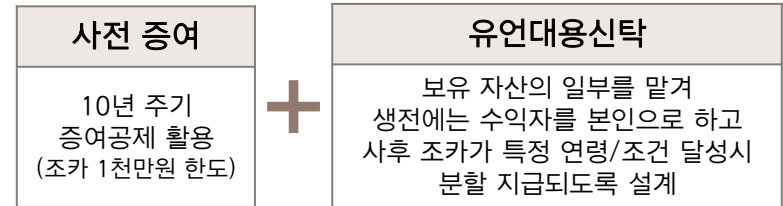
[참고] 무자녀 가구 플랜 사례

아직 어린 조카에게 = 사전 증여 + 신탁



▶ 60대 무자녀, 자산 일부를 어릴때부터 보아온 조카에게 남겨주고 싶음. 조카는 대학생으로 아직 젊고 재산관리 능력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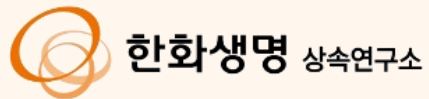
PLAN



▶ 조카의 미래 자립 기반 마련

- (증여) 증여시기 분산으로 절세 가능
- (신탁) 자산 낭비를 방지하고, 때에 따른 목적성 지원 가능

* 단, 타 상속인 존재시 유류분 청구 리스크가 있어 신탁 설계시 법률 검토 권장
부모가 이미 사망하고 무자녀일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형제·자매



필수 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